

노인차별이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과 공적기관상담의 매개효과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How the Ageism Influenced on Elder Abuse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Counselling from Public Organizations
:Focusing on Care Helpers Working at Elderly Long-term Care Institutions

진철숙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Chul-Sook Jin(jincs1012@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노인장기 요양 서비스 과정에서 행하게 되는 요양보호사의 노인차별이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노인차별과 노인학대의 인과관계에서 공적 기관 상담의 매개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한 연구이다. 경상남도에서 있는 노인장기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627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Baron과 Kenny(1986)의 방법에 의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노인차별이 노인학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분석결과 공적 기관 상담이 노인차별과 노인학대의 관계상에서 유의한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차별에 따른 노인학대를 공적 기관 상담을 통하여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노인차별과 공적 기관 상담에 대한 몇 가지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노인장기요양기관 | 노인학대 | 노인차별 | 공적기관 상담 | 요양보호사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ageism of geriatric care helpers influenced on elder abuse during their long-term care service for elderly, and analyzed the mediating effects of counselling from public organizations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geism and elder abuse.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as collected from 627 of care helpers working at elderly long-term care institutions in Gyeongsangnam-do Province, using structured survey(or questionnaire), and analyzed by Baron and Kenny(1986)'s multiple regression method. Ageism has a meaningful influence on elder abuse and counselling from public organizations has meaningfu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eism and elder abuse. These results show that elder abuse according to ageism can be improved by counselling from public organizations and It presents some practical implications for ageism and counselling from public organizations.

■ keyword : | Elderly Long-term Care Institution | Elder Abuse | Ageism | Counselling Of Public Organization | Care Helper |

1. 서론

노인차별(ageism)은 노인집단에 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편견(prejudice)과 차별(discrimination)을 의미하며[1], 서구사회에서는 성차별, 인종차별과 대등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2]. 한국사회의 경우 오랫동안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던 경로효친이라는 전통적이고 견고한 사회적 가치로서의 유교적 효는 노인을 연장자로서 존경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시켰으며 중요한 사회통제의 원리로 작용해 왔다[3].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고령화 현상은 자본, 물질, 생산성 중심의 현대 사회는 노인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고령화가 사회적 생산성의 감소로 인한 경제 위기, 복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및 정당성의 위기 등은 고령화 위기론을 불러오고 있다[4]. 이는 결과적으로 노인이 사회적 지지를 잃어가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5][6]. 노인차별에 관련된 주체는 노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차별하는 “가해자(개인, 가족, 사회, 문화, 법률 등을 포함)”가 있으며, 이런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손해를 입는 “피해자(victim)”가 있다[7]. 차별문제는 노인차별 자(ageist)의 의도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정책이나 관행일 수도 있고 개인이나 가족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개인인 차별자(ageist)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차별(ageist)자에 의한 노인차별이 단순한 차별이나 편견의 문제가 아닌 노인학대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할 수 있다.

2013년 자료(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하면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 건수가 총 학대건수의 85.0%이며, 생활시설 학대는 6.3%, 이용시설 학대는 1.0%로 대부분의 학대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시설학대 중에서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86%로 나타나 종사자에 의한 학대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2008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른 복지환경의 변화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수적 증가를 가져왔지만, 애초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던 노인학대 문제가 노인요양

시설로 확대되면서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인권문제와 학대가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기존의 서비스 주체인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요양보호사로 대체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저하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8]. 특히,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노인에게 직접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노인에 대한 차별이 노인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게 되고, 노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된다. 또한, 노인차별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 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는바[9], 노인의 존엄성 문제와 직결된 노인학대 문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신체적 측면으로는 기능 저하, 정신적 측면으로는 우울한 기분 및 정서적인 불안, 심리적 안녕 감, 수치심, 사회적 측면으로는 욕창 등의 기능저하로 인한 치료적 비용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불신 또한 높아진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노인학대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대인식[10-17][32], 신고의향[10][13][18], 학대예방[19][20], 학대유형[21-25], 학대실태[26-28], 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대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질적 연구 [29-35]가 몇 편 있었으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행위에 관한 연구가 방희명[12], 권지영[36], 김홍수[8], 김에스더[37]정도이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노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노인차별에 의한 노인학대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햇수로 8년여가 되는 현재 요양보호사 스스로가 노인학대에 대해 숙고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노인 인권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노장잡지, ‘청춘’[38]제2호에 실린 “학대 받는 노인들, 사회적 학대, 그 이름은 노인차별”이라는 기사에서 보듯이 노인차별이 노인학대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재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노인차별의식이 노인학대에 어떠한 영향 요인이 있는지 연구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차별의식을 제고하고, 노인

학대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 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노인차별은 노인 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2. 노인장기 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노인차별이 공적 기관에서의 상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3. 노인장기 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공적 기관 상담은 노인차별과 노인학대 사이의 관계를 매개할 것인가?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차별(Ageism)

노인차별(Ageism)이란 용어는 1969년 미국 국립노화연구소(NIA) 초대 소장이었던 로버트 버틀리에 의해 최초로 사용된 이후, 많은 연구자에 의해 논의 되었다. 버틀러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형화하고 차별하는 과정을 연령주의라 하였다[39]. 노인차별(ageism)은 나이(차별)주의, 연령(차별)주의, 노인차별주의, 노인 배타주의로 번역되고 있다[7][40][41]. 노인차별은 일반적으로 편견(prejudice)과 차별(discrimination)을 지칭하는 광범위한 의미[7][42]로 사회 차원과 개인 차원, 원인과 결과 차원, 가해자와 피해자 차원 등의 다양한 차원을 내포하고 있다[43].

Palmore(1999)[44]는 노인집단에 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편견(prejudice)이나 차별(discrimination)을 일컫는 것이라 하였다.

우리나라의 노인차별은 성차별, 학력차별, 지역 차별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관심도 적었다[9][40-42][45]. 그러나 노인차별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인 차원에서 그 피해를 점점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에서는 1967년 ‘연령차별 및 고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칭되고 2009년에 시행되었다[46]. 그러나 이 법

은 경제적인 관점, 즉 고용상의 문제만을 강조하고 있어서 경력이나 능력이 무시된 역(歷)연령으로 인한 차별로 사회, 문화, 법률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거나 대응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옥[40]은 국내의 노인차별실태에 관한 탐색조사를 하였으며, 원영희[9]는 노인차별로 인한 영향에 관한 연구, 남석인[41], 신학진[7]은 노인차별경험이 노인인식과 노년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했으며, 김주현[47]은 연령주의 척도 개발 및 타당성 연구, 신학진[46]은 노인차별 경험과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 중년의 노인차별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집단 간 불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차별경험, 즉 피해자의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의 관점에서 Fraboni et, al, "The Fraboni Scale Ageism(FSA)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노인장기 요양기관 요양보호사들의 노인차별의식을 살펴보고 노인차별이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2. 노인학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학대라는 용어는 각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을 반영하여 정의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변화할 수 있으므로 노인학대의 개념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48]. 협의의 개념은 노인에게 직접 상해를 입히거나 명백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며, 광의의 개념은 노인의 존엄성 및 인권보호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49].

우리나라도 선진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로 아동학대와 배우자 학대에 관심을 가져 왔다. 그러나 유교적 전통 아래 은폐되었던 노인학대 문제가 시대적, 환경적 문제와 맞물려 최근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아직은 연구가 빈약한 실정이다. 노인학대는 가족이나 사회가 현 사회의 노인 문제에 적절히 개입하지 못하고 방관하여 나타나는 최악의 결과로 볼 수 있다[49].

서구의 노인학대 문제는 1975년 영국에서 ‘구타당하는 할머니(granny battering)’라 는 Baker의 논문에서 처

음 소개되면서 노인학대가 가족폭력의 하나로 사회문제 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52]. 노인학대(elder abuse)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초 미국에서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초기에는 아동학대, 배우자 학대, 가정폭력과 관련지어 연구하거나 그 개념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52]. 1990년대 초반에는 노인학대를 가족학대, 시설 노인학대, 자기방임 등의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 물리적 학대, 심리적 학대, 재정적 학대, 방임과 권리 침해로 정의되었다[53].

미국의 노인학대헌장(The Action on Elder Abuse, 1995)은 노인학대를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인에게 해나 장애를 일으키는 단일한, 반복적인 행동 또는 적절한 행위의 부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노인 부처와 국립 노인학대 센터에서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심리적 학대, 재정적 학대 및 물질적 착취, 방임을 노인학대의 유형으로 보았다[54].

영국의 (Age Concern, 1991) 사회사업가협회, 노년의 학회회, 경찰연맹 및 전국조직의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에 의하면,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위협·비난·폭언), 성적 학대, 기본권 침해(식사·난방·의류·오락의 결여), 강제적 격리, 약물남용, 금전과 재산의 남용 등으로 노인학대를 확대 해석하여 분류하였다[55].

일본의 고령자 학대방지법에서는 노인학대를 노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적절한 취급 때문에 권리, 이익을 침해받는 상태나 생명, 건강, 생활이 손상되는 상태에 놓여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56]. 일본의 노인학대에서는 학대로 인한 결과에 초점을 둔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27].

국내에서는 1990년 이후부터 노인학대 연구가 진행되었다[31][49][57-64].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논의되었고 2004년 1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노인학대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한동희·김정옥[57]은 ‘자녀에 의존하고 있는 노인과 자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언어·정서적 혹은 심리적 상해와 인간의 신체적·정서적 복지를 무시하는 행위, 그리

고 자산에 대한 오용 등으로 노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연호[65]는 노인학대란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그리고 기타 부양자나 친척 등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양자에 의하여 행해지는 신체적·정서적·재정적 착취 및 방임과 노인 자신에 의한 방임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최근 시설에서의 노인학대가 관심을 끌면서 권중돈[49]은 노인학대를 ‘노인 자신, 노인의 감정이나 전문인시설의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인에게 해가 되거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일회성이거나 반복적 행동 또는 적절한 행동의 부족’으로 정의하여 시설에서의 학대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를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에서 노인학대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이나 타인이 노인에게 언어적·정서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치 제공하지 않는 방임, 그리고 자기 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66]. 노인학대로 인정되는 행위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3. 공적 기관 상담

상담이란 명료화, 재진술, 반영, 해석, 직면 등의 전문적인 대화방법을 통해, 내담자와 작업동맹을 토대로 행동, 감정의 변화를 위한 작업과정을 거쳐 내담자의 자기 이해, 문제 해결, 의사결정을 도움으로써 인간적 성장을 도와주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67]. 즉, 상담은 상담자와 문제를 가진 내담자가 대화를 통해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상담기관이 필요하며, 상담기관의 주된 업무는 상담활동이다. 상담기관 운영은 상담활동에 필요한 모든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업무기획과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상담기관은 상담활동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이 보

람을 갖고 상담활동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상담기관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중재기관으로서의 절차와 방법을 계통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담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담자의 실질적인 욕구충족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와 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상담기관운영의 일반적인 개념이다[68].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 등 복지환경의 변화로 많은 노인이 시설이나 재가를 이용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업무 중 겪게 되는 모든 문제를 본인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개인의 문제를 기관 차원에서 해결한다는 것도 한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므로 노인장기 요양기관 종사자를 위한 공적 기관에서 상담프로그램을 시스템화하여 서비스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조정 및 중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적인 상담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던 노인학대 문제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요양기관(요양시설, 재가)으로 확대되면서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인권문제와 학대가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노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에 의해 노인의 삶의 질이 담보 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노인차별의식이 노인학대, 공적 기관 상담과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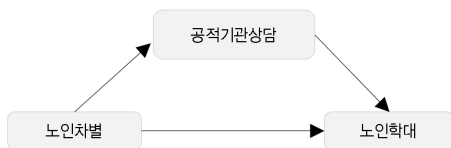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4년 10월 8일부터 10월 22일까지 경상남도지역에 있는 노인장기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 시행 전 KUIRB(경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심의번호: 1010460-A-2014)를 득한 후, 각 기관 담당자에게 연구자가 직접 본 연구의 취지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구두 동의한 자에게만 개별봉투에 밀봉하도록 한 후 본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받았다.

자료수집은 편의표본추출방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기 기재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총 640부(요양시설: 317부, 재가: 323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635부를 회수하였으며 99.2%의 회수율을 보였다. 응답이 누락되고 불성실하여 분석에 부적합한 8부를 제외한 62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조사 도구

3.1 종속변수 : 노인학대

노인학대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10년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 지침상에서 제시한 노인학대 유형 및 대표적인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지표를 토대로 노인장기 요양시설의 실정에 맞추어 김에스디[38]가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없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등으로 응답하도록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5문항으로 신체적 학대(11문항), 언어·정서적 학대(10문항), 성적 학대(2문항), 재정적 학대(4문항), 방임(8문항)으로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3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의 횟수가 많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0으로 내적 일관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3.2 독립변수 : 노인차별(Ageism)

노인에 대한 차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Fraboni et, al, "The Fraboni Scale Ageism(FSA)의 척도를 [69] 김나리[70]가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노인에 대

한 긍정적·부정적 차별과 편견의 내용을 포함한 29개 항목으로 ‘그렇다, 약간 그렇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등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차별의식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단, 6개의 긍정적 문항(12, 16, 18, 19, 24, 26)은 의미의 일관성을 위하여 역코딩 처리를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나는 노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노인들은 욕구 충족을 위해 많은 돈이 필요 하지 않다, 노인들에게 운명 허깅을 허가해 주면 안 된다, 노인들은 그들과 또래인 친구를 찾아야 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87로 내적 일관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3.3 공적 기관 상담

가족, 이웃, 본인이 학대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 공적 기관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며 水上 然(미즈가미 쓰츠루)[71] 가 사용한 5문항을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망설이지 않고 상담 한다, 망설이지만 상담 한다, 아마 상담하지 않는다, 상담 할 필요 없다.’등 의미의 일관성을 위해 척도를 역 코딩 처리를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 받을 확률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83로 내적 일관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확인하였으며,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의 정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 통계분석을 하였고, 연구 과정의 모든 유의 검증은 유의수준 .05 기준을 적용하였다. 노인학대 및 공적 기관 상담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교차분석을 하였다. 공적기관 상담의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해 통계 변인을 연구모형에 포함시켰다. Baron과 Kenny[72]의 회귀분석조합에 따른 매개 효과 검증을 시행하였으며, 붓 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적용하여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초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된 조사대상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서 제시하였다. 성별은 여자가 92.8%로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여성이었으며, 연령은 50대가 49.9%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고졸이 50.9%로 가장 많았다. 경력은 2년 이상 4년 미만인 28.8%가 가장 많았다. 학대 관련 교육 경험은 연 2회가 35.4%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 받은 적 없다는 응답도 12%나 되었다.

신고의무자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90.7%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58.0%가 ‘심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해서’라는 응답을 하였으며, 11.8%가 ‘신고절차를 모르거나 신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답변을 하였다. 27.9%는 업무 과중으로 노인학대신고에 관심이 없다고 답변 하였으며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39.7%, 비정규직이 42.7%로 요양시설 요양보호사는 대부분 정규직이며 재가기관의 요양보호사는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속기관으로는 요양시설이 48.9%, 재가기관이 50.7%로 분석되었다. 노인학대는 평균 3.22, 노인차별은 평균 3.76 공적기관 상담은 평균 3.43으로 나타났다.

2. 변인 간 상관관계

다음으로 연구모형에 고려된 변인들의 상관성 정도와 통제 변인 선정을 위한 상관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주요 변인인 노인차별과 노인학대는 노인차별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학대와 관련되는 정적 상관($r=.156, p<.01$)을 보였으며, 공적기관 상담과 노인학대도는 높은 수준의 공적기관 상담이 낮은 수준의 노인학대와 관련되는 부적상관($r=-.157, p<.01$)을 보였으며, 공적기관 상담과 노인학대는 높은 수준의 공적기관 상담이 낮은 수준의 노인학대와 관련되는 부적상관($r=-.157, p<.01$)로 나타나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설정한 3가지 연구문제가 타당함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공적 기관 상담은 독립변인인 노인차별(.048)보다 종속 변인인 노인학대(.156)와 더 큰 상관관

계로 나타나 매개 효과 검증에 대한 통계적 검증력을 최대화 할 수 있으므로 매개 변인으로 적절하게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특성	구분	명(%)
성별	여	582(92.8)
	남	45(7.2)
연령	20세~49세	188(30.4)
	50세~59세	308(49.9)
	60세 이상	122(19.3)
학력	중졸이하	170(27.1)
	고졸	314(50.9)
	대졸이상	128(20.4)
경력	1년 미만	177(28.2)
	1년 이상~2년 미만	120(19.2)
	2년 이상~4년 미만	181(28.8)
	4년 이상	140(22.4)
학대 교육경험	연1회 이하	269(42.9)
	연2회 이상	344(54.9)
신고 의무자여부	예	569(90.7)
	아니오	58(5.8)
신고 안한 이유	심하지 않거나 증거불충분	364(58.0)
	신고절차 모르거나 필요성 못 느낌	71(11.8)
	업무과중 관심 없음	200(27.9)
고용 형태	비정규직	268(42.7)
	정규직	249(39.7)
	상근비정규직	88(14.0)
	아르바이트	22(3.5)
소속 기관	재가센터	318(50.7)
	요양시설	307(48.9)
노인 학대	최소=0.00 최대=35.00	M=3.22 SD=4.141
	최소=1.76 최대=3.76	M=2.70 SD=0.323
노인 차별	최소=1.0 최대=5.4	M=3.43 SD=0.556

3. 모형분석

연구모형분석은 Baron과 Kenny의 회귀분석 조합에

따른 매개 효과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붓 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적용하여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표 3).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한 1단계에서, 노인차별이 노인학대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정적 영향(1.797,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노인차별이 매개변인인 공적 기관 상담에 미치는 효과는 공적 기관에서의 상담이 많으면 노인학대에 정적인 영향(.192, p<.009)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단계에서 노인차별과 공적 기관 상담을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 변인인 공적 기관 상담이 종속 변인인 노인학대에 부적영향(-1.149,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 변인인 노인차별이 종속 변인인 노인학대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미한 영향(2.196, p<.001)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매개 변인인 공적 기관 상담이 독립 변인인 노인차별과 종속 변인인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요양보호사의 노인차별이 노인학대에 미치는 간접효과로서 공적기관 상담의 매개 효과 계수 값(-.2208=.192× -1.149)에 대한 붓스트래핑(표본수 1,000개)을 적용한 통계적 검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제시된 것처럼 95%의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 값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적 기관 상담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노인차별은 공적기관에서의 상담을 높이고, 이것이 노인학대로 연결되는 매개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높은 노인차별이 노인학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도 유의하기 때문에 부분 매개 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최종 모형

표 2. 변인 간 상관관계

	노인학대	노인차별	공적기관상담	연령	성별	고용형태	학력	교육경험
노인학대	1							
노인차별	.156**	1						
공적기관 상담	-.157**	.048	1					
연령	-.003	.232**	-.099	1				
성별	.001	-.164**	.029	-.225**	1			
고용형태	-.091*	-.289**	.064	-.201**	.013	1		
학력	-.011	-.257**	.087*	-.432**	.193**	.225**	1	
교육경험	.001	-.059	.003	-.026	-.033	.246**	.056	1

*p<.05, **p<.01, ***p<.001

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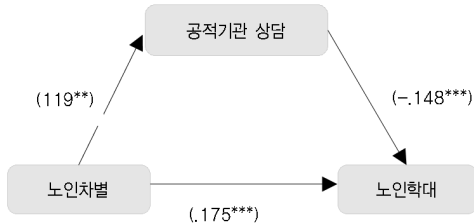


그림 2. 부분매개모형

V.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노인차별과 노인학대의 관계, 그리고 공적 기관 상담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협조 의사를 밝힌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311명과 재가기관 요양보호사 316명, 총 627명을 대상으로 Baron

and Kenny가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붓 스트래핑 (Boot-strapping) 방법으로 노인차별과 노인학대의 관계, 그리고 공적 기관에서의 상담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시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차별과 공적 기관 상담이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요양보호사의 노인차별은 노인학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적기관 상담은 노인학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노인차별과 노인학대의 정적인 영향에 대한 결과는 요양보호사의 노인차별이 노인학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공적기관 상담은 노인학대에 부적인 영향의 결과는, 요양보호사들의 노인차별에 대한 인식이 공적기관에서 상담을 받음으로써 노인학대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노인차별이 공적 기관의 상담을 통해서 노인학대로 연결되는 매개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어 부분매개모형이 검증되었다. 이를 토대

표 3. 공적기관 상담의 매개효과검증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공차 한계	VIF	R ²	ΔR^2
1 단계	노인학대	연령	-.018	.023	-.036	-.774	.782	1.278	.032	.022***
		성별	.424	.668	.028	.635	.908	1.101		
		고용형태	-.547	.380	-.0666	-1.440	.820	1.220		
		학력	.033	.208	.007	.158	.773	1.293		
		교육경험	.048	.189	.011	.251	.940	1.063		
		노인차별	1.797	.564	.158	3.510	.858	1.166		
2 단계	공적기관상담	연령	-.004	.003	-.057	-1.206	.784	1.276	0.020	0.012**
		성별	.037	.087	.019	.423	.908	1.101		
		고용형태	.079	.049	.074	1.604	.821	1.219		
		학력	.019	.027	.034	.720	.774	1.291		
		교육경험	.009	.025	.016	.359	.941	1.063		
		노인차별	.192	.073	.119	2.626	.858	1.166		
3 단계	노인학대	연령	-.022	.023	-.044	-.935	.782	1.279	0.054	0.043***
		성별	.467	.662	.031	.706	.908	1.101		
		고용형태	-.460	.377	-.056	-1.219	.817	1.224		
		학력	.053	.206	.012	.258	.774	1.292		
		교육경험	.055	.187	.01	.296	.940	1.063		
		노인차별	2.196	.562	.175	3.909	.847	1.180		
공적기관상담	-1.149	.323	-.148	-3.558	.980	1.020				

* p<.05, ** p<.01, *** p<.001

표 4. 공적기관 상담 매개효과의 붓 스트래핑 결과

변인	매개효과 계수	Boot.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공적기관상담	-.2208	.1182	-.5238	-.0453

로 볼 때, 요양보호사들이 대상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노인학대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인차별을 줄이고, 공적 기관에서의 상담을 장려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노인차별은 공적 기관 상담을 부분적으로 매개하기 때문에 노인차별이나 편견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공적 기관에서의 상담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노인차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요양보호사를 위한 상담시스템을 구체화 하여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 행위의 영향과 관련하여 김홍수[8]는 인권의식이, 권지영[36], 김에스터[37]는 근무환경이 학대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노인차별이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과 공적기관 상담을 매개로 학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연구가 기존의 연구결과와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토대로 요양보호사의 노인차별에 의한 노인학대와 관련된 추후 연구에 대한 실천적 함의 및 제한점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요양보호사로부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여부를 확인한 결과 90.7%로 대부분 요양보호사가 신고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심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8%이며, ‘신고절차를 모르거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가 11.7%, ‘업무 과중으로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7.9%였다. 이는 기관 내에서 노인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신고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으며 교육의 부재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을 둔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차별의식이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공적 기관에서의 상담으로 노인학대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노인차별을 줄이기 위해 노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정기적·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적인 상담창구를 만들어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갈수록 노인차별이 만연하는 우리 사회에서 노년층과 젊은

세대 간의 틈을 줄이고 사회적 지지를 잃어가는 노인세대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의 노인차별을 재고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한점으로는 첫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Bias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아래 노인학대에 관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노인차별과 노인학대의 관계에서 공적 기관 상담의 매개 효과만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른 변인들과의 영향관계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 추가적인 변인들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의한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차별과 공적기관 상담의 영향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E. B. Palmore, *Ageism 2nd eds.*,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99.
- [2] E. B. Palmore, L. Branch, and D. Harris, *Encyclopedia of ageism*, Haworth Pastoral Press, 2005.
- [3] 김주현, “연령주의(Ageism) 관점을 통한 노년의 이해”, *한국사회사학*, 제82권, pp361-391, 2009.
- [4] 김미숙, *고령화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대응방안: OECD국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3.
- [5] 김순이, 이정인, “노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학대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韓國老年學*, 제29권, 제1호, pp.231-242, 2009.
- [6] 전상남, 신학진, “주관적 건강 및 노인차별경험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韓國老年學*, 제29권, 제4호, pp.1383-1396, 2009.
- [7] 신학진, “노인의 차별경험이 자아통합감을 매개

- 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韓國老年學, 제30권, 제2호, pp.551-565, 2010.
- [8] 김홍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이 학대 행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9] 원영희, “노인차별 피해경험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제21권, pp.319-339, 2005.
- [10] 김은영, 최미정, 조귀영, “여성노인의 노인학대 인식과 신고의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호, pp.238-249, 2014.
- [11] 장희경, 김혜영, “성인 자녀의 노인학대 인식과 부양 스트레스”,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4권, 제3호, pp.358-367, 2013.
- [12] 방희명, “노인학대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3권, 제1호, pp.211-234, 2009.
- [13] 임병우, 주경희, 조성은,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과 일반노인의 노인학대 인식에 관한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제43권, pp.353-379, 2009.
- [14] 이금자, “농촌·도시 노인이 인지하는 노인 학대 및 방임에 관한 연구”, 복지상담학연구, 제2권, 제2호, pp.1-13, 2007.
- [15] 최해경, “수발상황의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과 원조요청 태도 : 재미한인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비교”, 한국인구학, 제27권, 제1호, pp.31-55, 2004.
- [16] 이인수, 이용환, “노인학대 인식도의 남녀 간 비교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10권, pp.165-184, 2000.
- [17] 이금자, 이현지, “노인의 학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38권, pp.209-229, 2007.
- [18] 고정미, “여성노인에서 학대 시 신고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6권, 제3호, pp.245-254, 2010
- [19] 윤현숙, “노인학대 예방 및 대처 교육프로그램 효과”,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34권, pp.231-258, 2010.
- [20] 배석연, “노인 학대의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 학회논문지, 제6권, 제4호, pp.328-338, 2012.
- [21] 김원천, 박현식, “노인학대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38권, pp.141-160, 2011.
- [22] 김운정, 이기학, “학대받는 노인의 유형별 특성 및 삶의 질 향상 방안”, 韓國老年學, 제29권, 제2호, pp.459-475, 2009.
- [23] 김한곤, “노인학대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대구광역시 노인학대신고센터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2009.
- [24] 이윤경, 김미혜, “연구논문 : 노인학대 유형화 및 유형결정요인 연구”, 韓國老年學, 제28권, 제4호, pp.1165-1178, 2008.
- [25] 우국희, “노인학대 유형으로서 자기방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전문가 관점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40권, pp.195-224, 2008.
- [26] 박완규, 김안자, “노인학대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21세기사회복지연구, 제8권, 제2호, pp.77-102, 2011.
- [27] 황영희, “노인학대 실태와 대책방안 고찰”, 사회복지지원학회지, 제4권, 제1호, pp.209-235, 2009.
- [28] 조명희, “여성노인의 학대실태와 관련변인분석”, 한국 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제2006년, 하계, pp.169-170, 2006.
- [29] 고보선, “제주노인의 학대피해 경험과 정서적 영향에 관한 연구 : 노인-부양자 관계특성을 중심으로”, 韓國老年學, 제24권, 제3호, pp.249-268, 2004.
- [30] 김미혜, 권금주, “머느리에 의한 노인학대 과정에 관한 연구”, 韓國老年學, 제28권, 제3호, pp.403-424, 2008.
- [31] 이현주, “학대의 세대전이를 통해 본 노인학대”, 社會科學研究, 제29권, 제3호, pp.409-431, 2013.
- [32] 이연순, 우국희, “요양보호사가 경험한 노인학대와 노인인권 인식 연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韓國老年學, 제33권, 제1호, pp.85-103, 2013.

- [33] 나용선, 노인학대 개입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노인학대 가해 및 피해상황 관련요인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34] 서인균, 고민석, “학대경험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保健社會研究, 제31권, 제1호, pp.127-157, 2011.
- [35] 김영경, 김영혜, 양진향, 유연자, 태영숙, “한국 여성 노인의 학대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질적연구, 제5권, 제1호, pp.1-9, 2004.
- [36] 권지영,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의 노인학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제15권, 제1호, pp.1-27, 2009.
- [37] 김에스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고양시 노인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38] 한준거름, “학대받는 노인들, 사회적 학대, 그 이름은 노인차별(Ageism)!” , 청춘 : 한국 최초 본격 노장 잡지, 제2호, pp.42-47, 2013.
- [39] Butler Robert, “Ageism”, The Encyclopdia of Aging New York, springer, pp22-23, 1987.
- [40] 김옥, “노인차별의 실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탐색적 조사연구”, 韓國老年學, 제23권, 제2호, pp.21-35, 2003.
- [41] 남석인, “남성노인의 차별경험이 노인인식 및 노년기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韓國老年學, 제28권, 제4호, pp.1297-1315, 2008.
- [42] 김옥, “억압의 한 형태로서의 노인차별주의(Ageism): 사회 복지적 대응과 함의”, 사회복지정책, 제14권, pp.97-118, 2002.
- [43] 신학진, “노인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절망과 우울의 매개효과”, 노인복지研究, 제56권, pp.191-215, 2012.
- [44] E. B. Palmore, *Ageism: Negative and Positive*,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99.
- [45] 신학진, 전상남, “주관적 건강 및 노인차별경험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韓國老年學, 제29권, 제4호, pp.1383-1396, 2009.
- [46] 신학진, “한국중년의 노화불안요인이 노인차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研究, 제55권, pp.33-63, 2012.
- [47] 김주현, “연령주의(Ageism) 척도의 개발 및 타당성 연구”, 한국인구학, 제35권, 제1호, pp.53-75, 2012.
- [48] 김미혜, “한국노년학의 복지 분야 연구동향 : 1980년(창간호)부터 2008년(28권 제2호)까지의 논문을 중심으로”, 韓國老年學, 제28권, 제4호, pp.733-752, 2008.
- [49] 권중돈, “노인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韓國老年學, 제24권, 제1호, pp.1-19, 2004.
- [50] 권금주, 노인학대 과정에 관한 연구 : 가해머느리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51] 임병우, 주경희, 조성은,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과 일반노인의 노인학대 인식에 관한 비교연구”, 노인복지研究, 제43권, pp.353-379, 2009.
- [52] 배석연, “노인 학대의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논문지, 제6권, 제4호, pp.328-338, 2012.
- [53] 이은희, “치매노인 학대요인에 관한 연구 :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韓國老年學, 제24권, 제3호, pp.91-110, 2004.
- [54] 이연호, 노인학대 위험요인과 피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55] 황영희, “노인학대 실태와 대책방안 고찰”, 사회복지지원학회지, 제4권, 제1호, pp.209-235, 2009.
- [56] 정경희, “한국형 노인학대 판정지표 및 사정도구 개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57] 한동희, 김정옥, “노년기 특성에 관련된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家族學 論集, 제7권, pp.185-212, 1995.
- [58] 이해영, “새로운 복지문제로서의 노인학대에 관한 고찰, 노인복지정책연구, 제3권, pp.300-328, 1996.
- [59] 이영숙, “고부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제2호, pp.359-372,

1997.

[60] 전길량, 송현애, “노인홀대에 관한 연구 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5권, 제3호, pp.83-94, 1997.

[61] 서운, “노인학대 사례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9권, pp.155-188, 2000.

[62] 우국희, “노인학대의 의미와 사회적 개입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연구 : 질적 조사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0호, pp.109-129, 2002.

[63] 한은주, 김태현, “노인학대의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韓國老年學, 제20권, 제2호, pp.71-89, 2000.

[64] 정호영, 노승현, “노인학대의 위험요인 및 심리적 결과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37권, pp.181-202, 2007.

[65] 이연호, “한국노인학대 개입의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 인간관계학보, 제9권, 제1호, pp.237-260, 2004.

[66] 박영수, 조용섭, “노인학대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제13권, 제3호, pp.109-136, 2014.

[67] 강진령, 손현동,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메타분석”, 청소년상담연구, 제12권, 제1호, pp.81-90, 2004.

[6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관 현황조사 보고서, pp.36-53, 1996.

[69] Fraboni et, al, "The Fraboni Scale Ageism(FSA): Anattempt at a More Precise Measure of Ageism," Canadian Journal of Aging, 제9권, 제1호, p.62, 1990.

[70] 김나리, *연령주의 관점에 근거한 노인복지주택 거주민의 주거공간인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71] 水上 然, “身体拘束廢止の意識に關連する要因の検討—總合リハビリテーション學部學生への意識調査から、”, 神戸學院總合リハビリテーション研究, 제10권, 제2호, pp.37-47, 2015.

[72]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73] 김선주, 엄동문, “정신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장애수용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41권, 제3호, pp.5-33, 2013.

저자 소개

진 철 속(Chul-Sook Jin)

정희원



- 2012년 8월 :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석사)
- 2015년 2월 :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수료)

<관심분야> : 노인인권, 장애인 인권 노인장기 요양보험